

# 2020 학년도 한림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신입학 모집요강

- 원서접수 : 2019. 7. 1.(월) 09:00 ~ 7. 10.(수) 17:00
- 서류제출 : 2019. 7. 1.(월) 09:00 ~ 7. 11.(목) 17:00

## < 목 차 >

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	3
II.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	4
III.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등록 안내 .....	5
IV. 세부 전형 안내 (정원내 2% 이내 모집) .....	8
1. 모집구분 .....	8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8
3. 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정원내 2% 이내 모집) .....	9
4. 전형방법 .....	12
5. 선발원칙 .....	12
6. 전형일정 .....	12
IV-1. 제출서류 안내사항 .....	13
V. 지원자 유의사항 .....	16
V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17
VII. 전형료 .....	18

# I. 전형요약 및 주요 사항

## 1. 신입학 모집 개요

### 가.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구분	수시	정시	계
인원수(비율)	1,454(79.9%)	365(20.1%)	1,819(100.0%)

### 나. 전형별 모집인원

구분	인원(명)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	5

## 2. 수시전형 요약

전형유형	전형방식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재외국민및외국인전형)	일괄합산	면접(100)

## 3.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가. 모집단위 변경

2019학년도		▶	2020학년도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		단과대학	모집단위(학과)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 경제, 금융재무)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경영대학	경영대학(경영, 금융재무)

## Ⅱ. 모집단위·전공(입학정원)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b>교직</b> , 사학)	110	5
	영어영문학과 <b>교직</b>		38	
	중국학과 <b>교직</b>		39	
	일본학과 <b>교직</b>		35	
	러시아학과		33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b>교직</b>		39	
	사회학과		3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정치행정학과		38	
	광고홍보학과		37	
	법학과		60	
	경제학과		52	
경영대학		경영, 금융재무	157	
자연과학 대학	화학과		33	
	생명과학과 <b>교직</b>		43	
	바이오메디컬학과		47	
	환경생명공학과		38	
	식품영양학과 <b>교직</b>		47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청각학)	65	
	체육학과		5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b>교직</b> , 콘텐츠 IT, 스마트IoT)	172	
글로벌 융합대학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 정보법과학)	29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4	
	데이터과학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60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디스플레이)	51	
	미래융합스쿨	(4차산업혁명, 디지털인문예술, 동북아지역, 융합관광경영, 의약신소재, 융합신소재)	45	
계			5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지정 (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최대 10%이내 선발)

### Ⅲ.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등록 안내

#### 1. 원서접수 주요사항

##### 가. 접수일정

접수일정	접수방법	비고
2019. 7. 1.(월) 09:00 ~ 7. 10.(수) 17:00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없음)	본교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입학상담센터로 접수

##### 나. 입학원서 다운로드

사이트	전화번호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입학상담센터 ☎ 033-248-1302 ~ 1304

##### 다.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접수방법	접수처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1 대학본부1층 입학상담센터 ☎ 033-248-1302 ~ 1304

#### 2.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시 수험생 본인의 증명사진 준비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접수 완료

나. 전형료 결제 후에는 접수취소, 지원 사항 수정, 전형료 환불이 불가하니 신중하게 작성하기  
바라며 전형료 결제 전에 반드시 재차 확인 요함

다. 원서 작성 시 기재(입력)사항 누락, 오기, 입력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과 연락처 오기 또는

- 변경으로 연락 두절되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라. 지원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추가 연락처)는 전형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된 경우에는 입학상담센터(☎ 033-248-1302 ~ 1304)로 즉시 통보해야 함
- 마. 접수 시 전형유형과 모집단위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함(원서접수 이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는 주민등록초본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입학상담센터로 제출해야 함)
- 바. 원서작성 시 제출하는 사진이 본인이 아닌 경우, 상반신이 보이지 않는 경우, 신원확인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에는 부정행위 및 부적격자로 처리하여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9. 7. 1.(월) 09:00 ~ 7. 10.(수) 17:00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서류제출		2019. 7. 1.(월) 09:00 ~ 7. 11.(목) 17:00 ※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면접 일정 공지		2019. 7. 19.(금)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면접		2019. 7. 23.(화)	
최초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19. 8. 6.(화)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9. 12. 11.(수) 09:00 ~ 12. 13.(금) 16:00	입학안내 홈페이지
총원 합격자	합격자 발표	2019. 12. 17.(화) 14:00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2019. 12. 17.(화) 14:00 ~ 12. 18.(수) 16:00	입학안내 홈페이지
잔여등록금 납부		2020. 2. 5.(수) 09:00 ~ 2. 7.(금) 16:00	입학안내 홈페이지

※ 서류 제출이 기한 내에 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서류 방문 제출 시간 : 평일 9:00~17:00

## 5.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통지서는 개별통보·발송하지 않고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가. 합격자 발표

구분	일정	비고
최초 합격자	2019. 8. 6.(화)	입학안내 홈페이지, 합격자 개별 안내
총원 합격자	2019. 12. 17.(화)	

### 나. 등록확인예치금 및 잔여등록금 납부

구분	등록(예치)금	일정	납부통지서 고지	납부방법
최초 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2019. 12. 11.(수) 09:00 ~ 12. 13.(금) 16:00	2019. 12. 10.(화)	은행 방문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 계좌이체
총원 합격자	등록확인예치금	2019. 12. 17.(화) 14:00 ~ 12. 18.(수) 16:00	2019. 12. 17.(화)	
전체	잔여등록금	2020. 2. 5.(수) 09:00 ~ 2. 7.(금) 16:00	정시 합격자 발표 이후	

### 다. 유의사항

- 1) 합격자는 지정 기간 내에 등록확인예치금과 잔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됨
- 2)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한 자는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 또는 입학은 취소함
- 3)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본교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함
- 4) 예비후보의 순위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 발표함
- 5)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잔여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 6)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는 해당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에 미달되더라도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IV. 세부 전형 안내 (정원내 2% 이내 모집)

### 1. 모집구분

전형	관련법령
입학정원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제2호 규정

###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과 / (전공)	입학정원 (정원내)	모집인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철학 <b>교직</b> , 사학)	110	5
	영어영문학과 <b>교직</b>		38	
	중국학과 <b>교직</b>		39	
	일본학과 <b>교직</b>		35	
	러시아학과		33	
사회과학 대학	심리학과 <b>교직</b>		39	
	사회학과		39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 노인복지학)	59	
	정치행정학과		38	
	광고홍보학과		37	
	법학과		60	
	경제학과		52	
경영대학	경영, 금융재무	157		
자연과학 대학	화학과		33	
	생명과학과 <b>교직</b>		43	
	바이오메디컬학과		47	
	환경생명공학과		38	
	식품영양학과 <b>교직</b>		47	
	언어청각학부	(언어병리학, 청각학)	65	
	체육학과		50	
소프트웨어융합대학	(빅데이터 <b>교직</b> , 콘텐츠 IT, 스마트IoT)	172		
글로벌 융합대학	글로벌학부	(글로벌비즈니스, 정보법과학)	29	
	미디어스쿨	(언론방송융합미디어, 디지털미디어콘텐츠)	84	
	데이터과학융합스쿨	(데이터테크, 임상의학통계, 디지털금융정보)	60	
	나노융합스쿨	(반도체, 디스플레이)	51	
	미래융합스쿨	(4차산업혁명, 디지털인문예술, 동북아지역, 융합관광경영, 의약신소재, 융합신소재)	45	
계				5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총 모집인원: 5명 (의과대학, 간호대학, 융합인재학부 모집인원 없음)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미지정 (단,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최대 10%이내 선발)



### 3. 지원자격 및 자격기준 (정원내 2% 이내 모집)

지원 자격
① 영주교포의 자녀
② 해외근무자의 자녀(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③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자영업, 현지법인, 해외 선교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 연수자, 기타)
④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 가. 재외국민

##### [기본 학력 요건]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일반적 자격기준 및 재학/거주/체류기간]

(단위: 년)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영주권을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과정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	3	2.5	2.5	-	2	2	2	2	연속
해외근무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	3	2.5	2.5	2	2	2	-	-	연속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 : 자영업, 현지법인 근무, 해외 선교활동, 해외파견 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 등	3	2.5	2.5	2	2	2	-	-	연속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	3	2.5	2.5	2	2	2	-	-	연속

### [재학기간의 인정기준]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 ▶ '외국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 포함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이수'란 외국 고등학교과정(1년)을 포함하여 계속 재학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 재학기간은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연도가 아닌 학기 기준으로도 적용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등학교 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 ▶ 학생의 지원자격이 되는 '외국 소재 학교 재학기간'은 보호자의 근무 또는 영주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의미함

###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상에 기재된 기간
-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 해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① 공무원의 범위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② 상사직원의 범위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 내국법인이 해당법인의 해외지사, 해외사무소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 ▶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의 상호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임직원을 파견한 경우

####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해외근무자의 근무형식]

-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교육, 연수, 출장, 유학 또는 해외취업 형식의 단기근무자는 제외)

## 나. 외국인

### [기본 학력요건]

국내외를 통틀어 초·중·고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 ▶ 외국소재 고교졸업자
- ▶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일반적 자격기준]

(단위: 년)

구분	지원 자격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비고
		학 생			보호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이상 수료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2	2	2	-	-	-	연속

### [재학기간의 기준]

-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이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이수한 외국의 고등학교과정(2년 전체)를 의미함.
- ▶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자격 안내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과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 자격을 표준화함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분	2020학년도까지	⇒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기간	대학 자율 설정	⇒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4. 전형방법

##### 가. 일괄합산 : 면접평가 성적순으로 선발

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반영 점수(비율)		
		학업성취역량	인성	적성
전 모집단위	면접 평가	400점 (40%)	300점 (30%)	300점 (30%)

※ 모든 지원자는 지원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한 후,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야 함

※ 본교에서 요구한 미비서류를 개별 통보한 제출일까지 미제출시 지원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함

##### 나. 동점자 처리 기준

※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최종 순위까지 동점일 경우 모두 합격자로 선발

1순위	면접 학업성취역량영역 점수	2순위	면접 인성영역 점수	3순위	면접 적성영역 점수
-----	----------------	-----	------------	-----	------------

#### 5. 선발원칙

가. 일괄합산을 통해 전형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나. 예비순위는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지(단, '다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순위 없이 불합격)

다. 불합격 처리대상자 및 예비순위 미부여자 : 제출서류 미비자, 지원자격 심사 부적격자, 면접성적 미달자(면접점수 250점 미만인 자), 학업능력이 대학수학능력에 크게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라. 총원합격자 선발 : 최초합격자 등록 마감 후 등록포기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모집단위별 예비순위에 따라 성적순으로 선발

마. 최종 총원합격자 등록 마감 후 발생한 미충원인원은 선발하지 않음

#### 6.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9. 7. 1.(월) 09:00 ~ 7. 10.(수) 17:00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서류제출	2019. 7. 1.(월) 09:00 ~ 7. 11.(목) 17:00 ※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면접 일정 공지	2019. 7. 19.(금)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면접	2019. 7. 23.(화)	
합격자 발표	2019. 8. 6.(화)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IV-1. 제출서류 안내사항

### 1. 제출방법

가. 제출처 : (우)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대학본부 1층)

제출기간	제출형태	비고
2019. 7. 1.(월) 09:00 ~ 7. 11.(목) 17:00	등기우편 제출	기간 내 도착분만 인정
	방문 제출	

- ※ 원서접수 및 전형료 결제는 2019. 7. 10.(수) 17:00까지 반드시 완료해야함
- ※ 서류 제출이 기한 내에 되지 않을 경우, 전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서류 방문 제출 시간 : 평일 9:00~17:00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2. 제출서류 유의사항

- 가.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 서류로 제출해야함
- 나.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원본과 한글 번역 공증본을 함께 제출
- 다. 입학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가 원본이 필요할 경우(예:고등학교 졸업장 원본 등)에 한하여 서류제출시 본교 입학상담센터에서 원본대조를 받은 후 원본을 반환받을 수 있음
- 라. 지원자격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제출을 지원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마. 외국학교 등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서” 1부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함(「아포스티유/영사확인서 제출 안내」 참조)

### 3. 재외국민 지원 자격 구분표

구분	지원자격	구분	지원자격
가	영주교포자녀	바	기타 재외국민자녀(자영업)
나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사	기타 재외국민자녀(현지법인)
다	해외근무상사 직원자녀	아	기타 재외국민자녀(해외 선교활동)
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녀	자	기타 재외국민자녀(해외 파견 교직원)
마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차	기타 재외국민자녀(기타)

### 3. 지원자격별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재외국민										외국인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1	입학원서 및 학력조회동의서	○	○	○	○	○	○	○	○	○	○	○
2	수학기간기록표	○	○	○	○	○	○	○	○	○	○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
4	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	○	○	○	○	○	○	○	○	○
5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	○	○	○	○	○	○	○	○
6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	○	○	○	○	○	○	○	○	○	
7	출입국 사실증명서(부모, 학생)	○	○	○	○	○	○	○	○	○	○	○(학생) <sup>1)</sup>
8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	○	○	○	○	○	○	○	○	○	
9	여권 사본(부모, 학생)	○	○	○	○	○	○	○	○	○	○	○(학생)
10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류(부모, 학생)	○	○	○	○	○	○	○	○	○	○	
11	보호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	○	○	○	○	○	○	○	○	
12	해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				
13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					
14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										○
15	정부기관 초청 또는 추천확인서					○						
16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부모, 학생)	○										○(학생)
17	외국인등록증											○
18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	○	○	○	○	○	○	○	○	

### 4. 아포스티유/영사확인서 제출안내

#### 가. 해당서류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와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1) 외국정부기관 발행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 (2) 공증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진단서, 회사 및 은행발행문서 등

#### 나. 발급방법

구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
발급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서
발급기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해당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

1)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다. 기타**

1)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 2002-0251, (02) 2002-0252
법무부	(02) 720-8027
한림대학교 입학상담센터	033-248-1302~1316, 1318

2)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공문서는 국무부(워싱턴)에서 발급하며 주(State)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문서는 각 주정부 국무부(Secretary of State)의 인증사무소에서 발급함

3) 각국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사무소의 위치 및 연락처 안내 받을 수 있음

※ 관련 정보 : [www.mofa.go.kr](http://www.mofa.go.kr) 외교부

(우측 상단) 외교부 소개→재외공관→재외공관설치현황, 재외공관정보

**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 관련 정보 : [www.0404.go.kr](http://www.0404.go.kr)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 V. 지원자 유의사항

- 본 모집요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함
- 본 모집요강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 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무효로 함

### 1. 대학지원 방법

#### 가. 수시모집 지원횟수 최대 6회로 제한

-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포함) 해당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함(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처리 됨

### 2. 복수지원 관련 사항

#### 가.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최대 6회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 가능함.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지원 가능
- 한림대학교 전형(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특기자전형) 간 복수지원 가능함(최대 4회 지원 가능). 단,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 최대 4회 지원 예 : ① 재외국민 및 외국인전형 미디어스쿨
  - ②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전형) 심리학과
  - ③ 학생부교과(교과우수자전형) 심리학과
  - ④ 특기자전형 글로벌학부

#### 나. 복수지원 금지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총원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3. 합격자 발표

- ※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admission.hallym.ac.kr](http://admission.hallym.ac.kr))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하며, 수험생은 합격여부를 조회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4. 등록

#### 가. 이중등록 금지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납부 포함)하여야 함
- 다수의 대학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수험생은 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을 취소함



-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한 수험생이 타 대학에 충원합격 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합격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등록포기

- 수시 합격자가 충원 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 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수험생의 합격 기회 박탈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함

#### 5.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입학전형에 사용된 전형자료에 주요사항이 누락, 허위, 위·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입학 및 졸업 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상기의 사유로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

#### 6. 기타

- 학력사항은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입학전형자료(성적, 평가내용) 및 제출서류는 일체 공개 및 반환하지 않음(재발행이 불가능한 일부서류에 한해 입학처 서류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 후 반환 가능)
- 고교졸업예정자가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됨
- 성명, 생년월일은 반드시 여권과 일치해야 하며 긴급연락을 위해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

## VI.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미등록 충원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순위 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 수시모집 합격자가 본교에 등록을 마치고 등록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포기 및 환불을 신청해야 함
-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완료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

구분	내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
신청장소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admission.hallym.ac.kr
신청기간	2019. 12. 14.(토) 00:01 ~ 12. 19.(목) 20:30 (※ 수시 최종 충원합격 통보 마감 전)
환불절차	① 한림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 접속하여 등록포기 및 환불신청 ② 신청자 정보 및 환불 계좌정보 확인 후 승인 ③ 3일 이내(주말, 공휴일 환불 없음)
환불금액	납부한 등록(확인예치)금 전액

## Ⅶ. 전형료

### 1. 전형료 및 납부 방법

#### 가. 전형료

전형유형	모집단위	전형료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체 모집단위	50,000

나. 납부방법 : 입학원서 제출 완료 후, 입학처에서 안내하는 전형료 납부 계좌번호로 전형료 (50,000원) 입금

### 2 전형료 환불

가. 전형료 전액 환불 : 수험생의 귀책이 없는 사유(천재지변, 질병, 사고 등)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고사일 기준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본교가 인정한 지원자

#### 나. 전형료 비례 환불

- 1)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0년 4월 30일까지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 2)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여야 함
  - ①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 ②대학에 직접 방문 : 반환방법 추후 공지
- 3) 반환방법 중 금융기관의 환불계좌 이체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전산망을 이용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함. 단, 금융기관 전산망 이용하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면접 일정이 확정 공지된 전형의 면접대상자가 타 대학과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